

교육부 감사 주요 반복 지적 사례



[출처 : 2024년 교육부 행정감사 기본계획]

교육부 감사 주요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부 감사 수감 시 반드시 점검하는 사항으로
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1. 복무 미처리 공무 외 국외여행

교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**업무에 지장이 없는 휴업 기간 중에 소속 대학(원)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**을 원칙

※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, 사립학교법 제55조

사례 1.

○○대학교 교원 64명이
대학장(총장)의 허가 등 복무 처리
없이 총 134회에 걸쳐 공무 외
국외여행 실시



사례 2.

○○대학교 교원 43명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
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고, 법정연가일수 20일을
넘어 사용한 10일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할 보수
1,275천원 수령



2.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

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
같이하는 사람으로 **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
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**고 규정

※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

사례 1.

○○대학교 교원 3명은 2017. 1월부터 2020. 5월까지
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되었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
가족수당 4,420천원, 맞춤형 복지비 900천원 등 [합계 5,320천원] 수령



3. 시설공사 제경비(안전관리비, 환경관리비) 미정산

발주자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
비를 계약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
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1항,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3항

